

전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가단3372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E

3.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김평수

4. F 주식회사

5.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한지영

변 론 종 결 2023. 3. 29.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8. 9. 17. 접수 제21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 대전신용보증재단, F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8. 9. 16. G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8. 9. 17. 접수 제21534호로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2006. 10. 24. 피고 B에게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전되는 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 대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3차전9849)에 근거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에 기하여 2013. 9. 24.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30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압류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2021타채538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1. 3.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F 주식회사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타채561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1. 4.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10. 8. 피고 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카단5375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받았고 2021. 10. 13.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로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주식회사, 대전신용보증재단, F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원고는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C 주식회사, 대전신용보증재단, F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계약일은 1998. 9. 16.이고 피고 C 주식회사가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13. 9. 24.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 등이 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압류권자이거나 가압류권자인 피고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

별지